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은행 본점 대구 이전〉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84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중소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 변경	3
2. 부칙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윤재옥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2024. 11. 12.
3. 회 부 일: 2024. 1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극심한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1년 기준, 대구에는 334,698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비율이 99.94%에 달함. 또 중소기업 종사자수도 767,648명으로 비율로는 93.55%에 이룸.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최고수준임.

또한 대구광역시에는 2014년 말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위치해 있어 중소기업은행이 이전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금융 및 전문컨설팅 제공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중소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 변경

□ 개정안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대구광역시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u>서울 특별시에</u> 둔다. ② (생략)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① ----- <u>대구 광역시에</u> -----. ② (현행과 같음)

□ 우리나라는 금융을 비롯한 각 부문의 자본과 인프라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방안이 요구되며, 그 일환으로 중소기업은행을 비롯한 공공·민간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이 고려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경제집중도를 보면,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¹⁾ 비중은 2016년부터 50%를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금융·보험업 부문 GRDP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1)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시·도 단위별 생산, 소비,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추계한 해당 지역의 부가가치

비중이 68%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수도권 및 전국 지역내총생산(실질GRDP) 비교>

(단위: 조원, %)

구 분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전 부문	수도권 (비중)	749.5 (49.3)	800.5 (49.5)	862.8 (50.5)	942.0 (51.9)	972.6 (52.8)	1,050.6 (53.3)
	전국 (비중)	1,519.4 (100.0)	1,615.8 (100.0)	1,709.7 (100.0)	1,814.1 (100.0)	1,842.4 (100.0)	1,972.4 (100.0)
금융· 보험업	수도권 (비중)	48.1 (64.9)	52.5 (63.9)	58.6 (65.2)	64.9 (65.7)	76.2 (68.0)	84.1 (68.3)
	전국 (비중)	74.1 (100.0)	82.2 (100.0)	89.9 (100.0)	98.8 (100.0)	112.1 (100.0)	123.1 (100.0)

자료: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한편, 그동안의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경과를 살펴보면, 2014년 9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탁결제원이 부산으로 이전하고 같은 해 12월 신용보증기금이 대구로 이전하는 등 부산·대구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바 있음.

○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정주여건에 관한 임직원의 불만이나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²⁾와 인구 증가 등 지역발전 기반이 강화된다는 평가도 있음³⁾.

2) 2014년 말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대구·경북) 인재 비중은 2014년 10.6%에서 2022년 23.4%로 증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

3)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2018.11., p.2.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에 편중된 자원을 배분하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는 것은 2014년 대구광역시로 이전한 중소기업 종합금융지원 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중소기업은행의 주요 대상사업체인 중소기업의 52.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현장 밀착관리의 어려움 및 고객 불편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다른 국책은행과 달리 중소기업은행은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측면이 강하고 경쟁·협력 관계인 중소기업 유관단체와 시중은행 본점 등이 대부분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중소기업은행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 및 부산 역시 아직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이 확고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 공공기관을 타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금융중심지 조성·발전 정책의 방향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⁴⁾.

4) 그 외에 현재도 중소기업은행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IBK창공 지방 개소 등을 통해 지역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IBK창공(ibk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부산(2019. 5.), 대전(2022. 1.), 광주(2024. 9.)에 이어 대구에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기관별·지역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공론화 과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논의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원 효율성 및 은행 경쟁력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편, 개정안은 중소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있으나, 본점 소재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금융공공기관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그 소재지를 법률에 명시한 경우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

<한국은행 및 금융공공기관 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련 법률 규정>

구분	기관명	법률 규정
법률 명시	한국은행	「한국은행법」 제7조(사무소)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 제5조의2(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정관 위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제5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①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 개정 전: ① 기금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조(사무소) ① 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둔다. * 개정 전: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 이 중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서 각각 부산 및 대구로 이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였던 법률 규정을 개정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다시 정관에서 소재지를 규정하였음.

○ 개정안과 같이 본점 소재지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정관으로 본점 소재지를 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 시 법률 개정에 비해 결정과정이나 소요기간 측면에서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입법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부칙

☐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개정된 법률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전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와 사옥 건설 및 실질 이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일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동 개정안과 달리 중소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할 경우에는 개정안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104
